

EU-베트남 FTA발효 예정



유럽연합(EU)과 베트남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(FTA, Free Trade Agreement)이 오는 8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. EVFTA(EU-Vietnam FTA)는 의류 완제품 관세의 단계적 철폐로, EU로 수출되는 한국산원단 사용 의류제품의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다.

- EU는 2014년 싱가포르와 FTA 협정체결 이후 아세안국가로는 두 번째로 베트남과 FTA 협정을 체결
 - 특히 EVFTA는 우리나라 섬유산업에 중요한 기회로 평가되며, 베트남에 진출한 섬유· 의류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원단 기업의 베트남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
- EVFTA는 EU 정상회의 승인과 27개 EU 회원국 전체의 비준을 거쳐 발효 예정에 있음.
 - EU는 베트남 상품 70.3%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7년 안에 99.7%를 무관세 적용
 - 베트남은 EU 상품 64.5%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7년 안에 97.1%를 무관세 적용
- 교체누적제도*를 통해 한국산 원자재를 사용하면 무관세 적용을 받음.
 - 한국의 경우 EU와 FTA를 맺고 있기 때문에 EU로 수출되는 베트남산 의류에 사용된 한국산 원단이 역내산으로 간주되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對베트남 원단수출 업체와 베트남에서 의류를 제작하는 한국 봉제업체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전망

* EU와 FTA를 맺고 있는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베트남과 동일한 무관세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

◆ 발효예정일 : 2020년 8월 1일

1. EVFTA 주요 내용

- EU로 수출되는 섬유, 실, 원단 등 원재료에 대한 관세는 대부분 철폐됨.
 - 폴리에스터 섬유품목은 예외적으로 발효일로부터 4년 후 철폐
 - 의류 완제품의 경우 발효 후 4~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
 - 상기의 특혜세율은 EU-베트남 협정상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함.
 - 단, EVFTA에서는 다른 국가에서 공급된 원재료를 일정 조건 하 역내산으로 간주하는 ‘교차누적’을 인정하며, 대표적으로 한국산 원단이 해당됨.

○ 교차누적인정 조건

① 한-EU FTA 원산지 규정 충족 원단	한국산 원단이 베트남산으로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-EU FTA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여 ‘한국산’으로 원산지증명된 것
② 직접운송 원칙 충족	한국산 원단이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경우 베트남, 한국 이외 제 3 국의 경우 없이 직접 운송된 것
③ 원산지증명서 상 표시 의무	한국산 원단을 교차누적한 경우 해당 사실을 EU 에 통보되어야 하며, 베트남에서 생산된 최종 의류 제품은 한국산 원단을 사용하였음을 베트남에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 상 표기되어야 함.

○ 의류기업EV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

- 한국 원단 생산 기업은 제조공정도 등으로 국내 생산 공정을 입증하여, 베트남 수출 시 한-EU FTA 원산지증명서를 전달해야 함.



2. 기대효과

- **(관세철폐)** 베트남의 對EU 수출상품의 99% 관세 철폐로 베트남에 진출한 많은 한국기업들에게도 수출시장 확대 예상

- **(수혜 분야)** 섬유·의류, 신발, 목재가구, 농수산물에 EU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
 - 섬유·신발 산업은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활발히 생산 중
 - 베트남 진출기업들은 인하된 관세를 적용하여EU산 기계설비 및 시험장비의 수입이 가능해짐.

- **(경제 효과)**
 -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2025년까지 베트남 GDP는 4.5% 증가, 對EU 수출은 42.7% 증가할 것으로 전망
 - EU위원회는 2035년까지 EU의 GDP가 295억달러 늘고, 對베트남 수출은 29% 증가할 것으로 예상